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844

발의연월일: 2024. 11. 25.

발 의 자:소병훈·정준호·정성호

조계원 · 이개호 · 박희승

정동영 • 이수진 • 안태준

이원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도시지역에 비해 응급의료분야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으나,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리 계획 이 부재함.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리 계획도 응급의료기본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응급의료에 대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제1호라목 및 제13조의7 신설).

법률 제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 제1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7(응급의료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 (생 략)	연차별 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	2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	
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	1
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u><신 설></u>	라.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
	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3조의7(응급의료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정
	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응급
	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